「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78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사안 접수·심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임.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피해학생 지원과 센터 운영의 질을 관리·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이에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추진근거

-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2항
- o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교육부훈령 제329호)
- o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다. 필요성

- o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담 지원은 상담·치료 등에 있어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슈퍼비전 체계가 필요함
- o 민간위탁으로 전담지원을 하는 것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분리하여

상황에 맞는 안정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봄

- o 민간기관은 전문적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까지 운영된 민간위탁 사례에서 긍정적인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효율적 운영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 o 민간위탁 기관은 계약을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받으므로 과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성과 중심의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가능함. 그 외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 및 인력풀 활용이 용이함

라. 위탁사무

- o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을 위한 주간보호형 위드위센터 운영 및 피해학생 통합 지원
- o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o 자기이해 및 의사소통기술, 사회성함양 프로그램, 자기주도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인관계 개선 및 적응 지원
- o 학습 계획 코칭 및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교과교육 지원을 통한 사후 학교 적응력 제고
- o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노작교육, 자격취득과정 등 운영
- o 보호자 및 가족 상담 등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위탁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사. 예산규모: 금692,212천원(금346,106천원×2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안) 【별첨 1】

나. 관계법규 : 【별첨 2】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2항

o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교육부훈령 제329호)

【별첨 1】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렴 맑음! 서울교육 밝음!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안)

I.

II.

2025. 5.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안)

민주시민교육과 상담마음건강팀

2020년에 시작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25. 12. 31.)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 체제를 유지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2항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교육부훈령 제329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Ⅱ 필요성

○ (국가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마음건강정책을 학생 중심 지원체계로 통합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함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 ~ '29)**

○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지역적) 피해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위(Wee)센터 기능 강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 맞춤형 상담·교육 전담지원 제공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심리적 외상을 회복하고 학교와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연계 지원기관 구축·운영

❖ **서울교육 5대 핵심과제**

○ **(심리・정서 위기학생 회복·지원)**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생들이 심리·정서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치유·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 **위(Wee) 프로젝트 상담·치유 지원체계**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일상복귀를 위해 특화된 [2차 상담기관] 지속적 운영 필요

○ (전문적)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강화

- **전문적 지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담 지원은 상담·치료 등에 있어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슈퍼비전 체계가 필요함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풀을 보유한 민간기관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

- **피해학생 요구의 다양성 대응에 용이함**
  - 피해학생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해지고 있으므로 개별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 민간기관은 전문적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까지 운영된 민간위탁 사례에서 긍정적인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효율적 운영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 **피·가해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 지원 필요**
  - 제도권 교육 시스템 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한 각각의 센터를 모두 만들고 유지하기에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담지원을 하는 것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분리하여 상황에 맞는 안정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봄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외상, 사회적 위축, 학교부적응 등의 어려움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으로 전문성 축적 및 사업 운영 노하우가 많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과업 중심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함**
  - 민간위탁 기관은 계약을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받으므로 과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성과 중심의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가능함
  -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 및 인력풀 활용이 용이함

Ⅲ 운영 현황

1. 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0. 2. 5. ~ 2025. 12. 31.

❍ 수탁기관: 푸른나무재단

❍ 운영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88 3층, 위드위센터

❍ 위탁현황

구 분	위탁기간	수탁자	비고
최초위탁	1년('20.2.5.~'20.12.31.)	(재)푸른나무청예단	공모
위탁	1년('21.1.1.~'21.12.31.)	푸른나무재단	재계약
위탁	2년('22.1.1.~'23.12.31.)	푸른나무재단	공모
위탁	2년('24.1.1.~'25.12.31.)	푸른나무재단	재계약

❍ 추진경과

순	일자	내용	비 고
1	2012.12.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	2019.1.	교육부 국가시책사업(가정형Wee센터 구축) 특별교부금 교부	
2	2019.9.	민간위탁기관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푸른나무 재단
3	'20.2.~'21.1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	1년 단위 계약, 운영평가 후 계약 연장
4	2021.11.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5	2021.12.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푸른나무 재단
6	'22.1.~'25.1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	2년 단위 계약, 운영평가 후 2년 계약 연장

○ 주요사무

구 분	세부내용
일시보호	■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 지원
상담 프로그램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상담, 미술치료 ■ 피해학생의 위기상황 심층 파악 및 위기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 피해학생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치유 프로그램	■ 피해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덕목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연극, 원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심리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	■ 피해학생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 피해학생의 긍정적인 에너지 활력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학습진로 프로그램	■ 피해학생의 학습 결손을 막고 학업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학습 지도 ■ 피해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고, 관심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경험 기회 제공
맞춤형 서비스	■ 피해학생,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생활·의료·장학·법률·가족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피해학생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교육 및 연수	■ 서울시 관내 상담(교)사 및 일반교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교육
네트워크 ·홍보	■ 자문위원단 회의 및 홍보물(영상, 리플릿 등) 제작·배포, SNS 홍보 등

2. 2024~2025 운영 현황

❍ 계약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 인력구성

직위	실장	상담원	총합
직원수(명)	1	4	5

❍ 운영예산: 금600,000천원 (금육억원, ※24개월 기준)

연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합
2024	60,272,980원	193,827,020원	30,900,000원	285,000,000원
2025	84,592,520원	193,207,480원	37,200,000원	315,000,000원

3. 2024 운영 실적 [※2025 운영은 현재 추진 중]

구분	일시보호				개인상담		특별프로그램	토탈케어		교사연수	기타			총계
	치유	체험	학습	진로	학생	보호자		맞춤형	자조모임		사후관리	사례회의	캠페인	
명	344	411	52	166	9,845	1,661	388	32	50	926	212	466	12,598	
건	665	971	149	417	9,845	1,661	388	8	3	4	212	45	12,598	
계	665	971	149	417	9,845	1,661	388	8	3	4	212	45	12,598	**26,963**

- 학생상담지원 : 개인상담(비대면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학교지원
- 학부모상담지원 : 개인상담, 전화상담

Ⅳ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1. 추진 개요

○ 사 무 명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6. 1. 1. ~ ′27. 12. 31.(2년)

○ 위탁비용 : 금692,212천원(금346,106천원×2년)

- 위탁비 산출근거: 원가조사보고서
- 위탁비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포함
- 위탁비는 예산 심의 및 계약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공모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사무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을 위한 주간보호형 위드위센터 운영 및 피해학생 통합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기이해 및 의사소통기술, 사회성함양 프로그램, 자기주도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인관계 개선 및 적응 지원
- 학습 계획 코칭 및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교과교육 지원을 통한 사후 학교 적응력 제고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노작교육, 자격취득과정 등 운영
- 보호자 및 가족 상담 등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2. 추진 절차

민간위탁 사전조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	일상감사	공모계획 및 수탁기관 선정	위탁·수탁 계약 체결	교육감 보고 홈페이지 공개
민간위탁 검토협의회 자문	교육감 결재	민간위탁	감사관	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계약 체결 위탁사무 인계·인수	수탁기관 계약결과 공개
'25년 5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10~11월	'25년 12월	'25년 12월

□ 민간위탁 사전조사 (※기완료)

❍ 검토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및 필요성

❍ 검토방법: 민간위탁 검토협의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한 위원 자문

❍ 자문·검토내용

-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민간위탁 이외 직영 등 기타 효율적 사무추진 방식에 대한 자문
- 자문·검토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적정 및 필요

□ 일상감사 요청

❍ 대상: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계약

❍ 절차: 감사관 요청 → 감사관 일상감사 실시

❍ 서류: 일상감사 의뢰서, 해당사업 예산서, 사업추진 결재 원안
(사업계획서, 공고문, 원가계산서, 수탁기관 선정요소 및 배점 등)

3. 수탁기관 선정

❍ 공모 및 모집공고

- 유형: 공개모집
- 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준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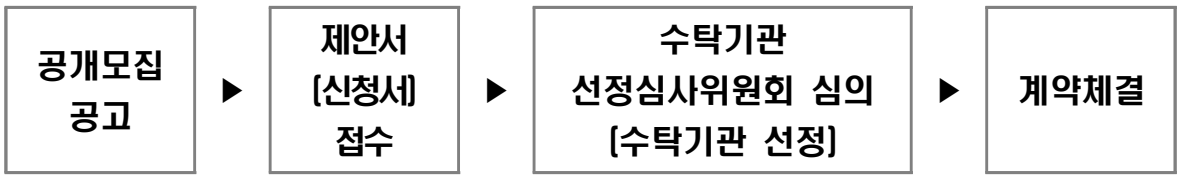

❍ 구성: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9명 이내로 구성

- 임명직: 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명)
- 위촉직: 외부 전문가(○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19. 3. 28.] 제6조 의거 구성 예정

❍ 수탁기관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검토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준, 재정부담능력
-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 위탁 · 수탁 계약 체결

❍ 주요내용

구분	계약 주요 내용
일반적인 사항	▪ 계약기간, 계약금액(비용지원 및 정산), 위탁내용(위탁시설·재산 및 운영방법 등), 위탁조건, 성실의무, 기밀유지, 사건·사고 보고 ▪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방법, 재산보전 ▪ 사고발생 시 배상문제 등
지휘·감독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시정 사항 ▪ 연1회 이상의 일반감사 ▪ 계약내용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이행여부 점검방식
기타	▪ 고용승계관련 규정, 사무편란 작성·비치 ▪ 위탁업무에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경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별첨 5참조)하거나 반영하여 사용 ▪ 재위탁의 금지, 계약이행보증금 등

❍ 유의사항

- 위탁사무 범위 명확화: 위탁·수탁기관 간 비용부담 범위 및 시설물 보수·운영 한계 명확화
- 업무처리 기준 설정
- 연간비용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결정: 지급방법은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수탁업체와 계약으로 정함,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한 정산 지급
- 비용청구 및 지출방법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Ⅴ 향후 일정

연번	추진 일정	내용	비고
1	2025. 5월	시의회 동의안 제출	
2	2025. 6월	시의회 동의	
3	2025. 7월	일상감사 실시	
4	2025. 9~10월	수탁기관(위드위센터) 선정 계획 수립	
5	2025. 10~11월	수탁기관(위드위센터) 공모실시	
6	2025. 12월	위탁·수탁 계약 체결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02-2282-86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17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6. 10.]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94호, 2019. 6. 1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02-2282-8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당 사무에 종사한 기존 인력의 축소가 예상될 경우 해당 인력관계 부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6.10.]

제3조(수탁 신청)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 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여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며, 위탁 계약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공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민간위탁 기본계획서 사본과 함께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갱신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

2. 민간위탁계약서
3.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부
4. 시설사용대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제8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94호,201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관계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5. 22.] [법률 제206700호, 2025.1.21.,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3. 2.]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일부개정]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